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. 12. 19 선고 2017가단203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12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별지1.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, 경주시 C 답 1955m²를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15. 4. 30.부터 위 1.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,359,3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.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정순열

별지